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날 및 현충일 요일지정 휴일제 도입〉
■ 위성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2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락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9.
3. 회부연월일 : 2024.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부터 제안되었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에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한다면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 연휴가 관광산업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고 분석하는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은 이미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여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쉼 권리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을 각각 특정일이 아닌 5월 첫번째 월요일 및 6월 첫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호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u>어린이날(5월 5일)</u> 6. <u>현충일(6월 6일)</u> 7. ~ 10. (생략)	제2조(공휴일) ----- ----. 1. ~ 4. (현행과 같음) 5. <u>어린이날(5월 첫 번째 월요일)</u> 6. <u>현충일(6월 첫 번째 월요일)</u> 7. ~ 10.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각각 5월 첫 번째 월요일,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요일지정 휴일제의 제도적 장점으로서는 공휴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유리한 제도로서 국민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고,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소비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음.

이와 같은 요일지정 휴일제의 제도적 장점을 고려할 때 특정한 날짜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공휴일제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 휴일제는 3일 기간의 연휴(토·일·월)를 보장함으로써 소비 진작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다 실효성있게 담보하는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어린이날과 현충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짜가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가적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정서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날과 현충일의 경우 역사적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에 비해 특정한 날짜를 기념하여야 할 상징적 의미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현충일이 6월 6일로 정해지게 된 연혁적 배경과 별개로 해당 날짜를 어린이날, 현충일로 지정하여 운영해온 관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적 관념상 받아들여진 상황이라면 해당 날짜에 나름의 고유한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또한, 국가적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특정한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기념일 또는 추모일 제정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 정서 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봄.

둘째, 요일지정 휴일제 전환에 따른 공휴일 수의 증가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대체공휴일 제도¹⁾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충일의 경우 요일지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정 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휴일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현행 제도 대비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요 국가 공휴일 수>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공휴일 수	15일	16일	11일	12일	8일	10일	11일

자료: 인사혁신처

셋째, 「아동복지법」 제6조²⁾에서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동 법률에 대한 개정이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인사혁신처는 요일지정 휴일제 도입은 공휴일의 안정적 운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어린이날은 이미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어 도입 효과가 크지 않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현충일의 경우 요일제 공휴일 지정시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요일제로 지정하는 것은 공휴일의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어린이날·현충일 주관 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연간 공휴일 편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나, 현재 대체·요일제 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³⁾ 공휴일로 지정된 특정 날짜가 갖는 의미와 내수활성화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날은 1922년 제정되어 1946년부터 매년 5월 5일에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고, 1981년 「아동복지법」에도 5월 5일로 명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바, 대다수 국민이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일제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역동경제 로드맵('24.7.3. 발표)에 “휴일제 개선방안,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4.下~)” 포함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충일은 1956년 지정 이후 69년 동안 6월 6일에 추념식을 거행하며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로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